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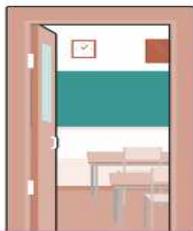
# 학원 운영·광고 어떤 경우에 불법인가요?



## 1. 학원비(교습비) 초과 징수

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,  
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

※ 학원법 제15조제3항(교습비등의 표시·게시)



학원은 잘 보이는 곳에 교습비 등 게시·표시

※ 내부(학원, 교습소, 개인과의교습자 주거지),  
외부(학원, 교습소) 모두 게시

나이스대국민서비스([www.neis.go.kr](http://www.neis.go.kr))

▶ 학원서비스에서 학원 교습비 등 확인 가능



교습비 이외의 비용(교재비, 레벨테스트비 등)  
추가 징수 금지

## 2.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과대 광고

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·과장 광고는 불법입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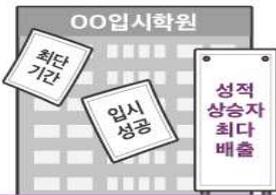
※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, 학원법 제17조제1항제9호

### 예시 1



“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 
초등 때 중등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.”

### 예시 2



“최단 시간, 최소 스케줄, 최고 효율로  
입시 성공, 성적 상승자 최다 배출”,  
“최고의 커리큘럼으로 8년동안 명문대  
1,000명 이상 합격 신화”

## 3. 유아영어학원의 유치원 명칭 사용 금지

※ 유아교육법 제35조, 학원법 제15조의2



영어유치원은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 
등록된 “학원”

- 학원법 적용
- 학원은 고유명칭 다음에 ‘학원’을 붙여 표기



학원은 유치원 또는  
유치원과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

- 사용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유사명칭 사례 :  
킨더가든(kindergarden), 프리스쿨(preschool),  
키즈스쿨(kids school), 킨더슐레(kinderschule)

## 4. 미인가 국제학교 주의

승인이나 인가를 받지 않고 '학교' 명칭을 쓰는 교육 시설은 불법입니다

※ 외국교육기관법 제22조 등, 초·중등교육법 제67조 등



승인·인가를 받지 않고  
국제학교 명칭 사용 금지  
- 해당 시설들이 경영난으로 예고없이  
폐쇄될 경우, 등록금 미 환불 등 피해 가능

### 🔍 승인·인가·등록 여부 확인 방법

외국인학교·외국교육기관·제주국제학교

[www.isi.go.kr](http://www.isi.go.kr)

학원 등록 여부

[hakwon.neis.go.kr](http://hakwon.neis.go.kr)



## 5. 불법운영 학원 신고 포상금 지급제도

불법운영 학원 등 신고 시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
(보통교과,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)

※ 학원법 시행규칙 제17조

- ✓ 개인과외교습 신고하지 않고 교습한 경우, 월 교습비의 50%  
※ 500만원 한도
- ✓ 교습비 등을 거짓으로 표시·게시·고지하거나  
등록·신고한 교습비보다 초과 징수한 경우, 10만원  
※ 학원·교습소의 경우 보통교과,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
- ✓ 시·도 조례에서 정한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, 10만원  
※ 보통교과, 외국어 교습행위 한정
- ✓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학원·교습소·개인과외교습자의  
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서면제출  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

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